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167 압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시 B 임야 4,357㎡ 중 1/144 지분 및 C 임야 1,520㎡ 중 1/144 지분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1)]

---

1) 원고는 위 각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을 면적으로 표시하여 특정하고 있으나(원고의 소장 참조), 이는 원고가 위 각 압류처분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으로 특정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0. 7. 20. ◯◯시 D 임야 96㎡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여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취하하였다(을 제10호증, 2023. 3. 9. 제3회 변론조서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 E 지상에 벽돌/기타(강판) 구조의 연면적 40.28㎡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반 건축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 6. 27.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자진철거 등 시정(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추인)을 하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사실 통지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대지위치	불법사항	구조	용도	위반면적(㎡)	층수	비고
◯◯시 E	불법 건축	벽돌/ 기타(강판)	단독주택	40.28[2]	1층	건축법 제14조 위반 건축행위: 2010년경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반 건축물을 특정하여 위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2015. 8. 1.까지 자

2) = 벽돌구조 단독 주택 부분 27.8㎡(= 19.8㎡ + 8㎡) + 강판구조 부속창고 12.48㎡(= 6㎡ + 6.4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그 시정명령서에는 '만약 지정기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2015. 7. 8.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을 2015. 10. 31.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위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반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946,4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 12. 9.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자진철거 등 시정 완료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건축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등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위 마.항과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19. 다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반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66,9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 2. 17.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자진철거 등 시정 완료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건축물 위반건축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대지위치	불법사항	구조	용도	위반면적(㎡)	층수	비고
○○시 E	불법 건축	벽돌/ 기타(강판)	단독주택	36.8[3][4]	1층	건축법 제14조 위반 행위연도: 2010년경 2011년경

아. 원고는 위 사.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정통지 기간 내에도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위 사.항과 같이 위반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66,9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2017. 4. 13.까지 납부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하였고, 2017. 6. 30.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이하 '이 사건 종전 압류처분'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화물차는 2019. 5. 7. 환가가치 차령초과를 이유로 자진 폐차되었다.

차. 이후 피고는 2020. 7. 20. 다시 원고 소유의, ○○시 B 임야 4,357㎡ 중 1/144 지분 및 C 임야 1,520㎡ 중 1/14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체납으로 인한 각 압류(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3) = 벽돌구조 단독 주택 부분 27.8㎡(= 19.8㎡ + 8㎡) + 강판구조 부속창고 9.48㎡(= 3.6㎡ + 5.4㎡)

4) 강판구조 부속창고의 면적이 일부 줄어들어 위반면적이 종전보다 축소되었다(을 제1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납부 등을 해오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적법한 건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이어서 국세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를 할 수 없다.

3)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실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세 납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적법한 건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사용되는 건물번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부여되는 것인바(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이 사건 주택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위법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시켰거나 장래 양성화시킬 것을 전제로 재산세의 부과나 도로명 주소의 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임야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 제19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호에 의하면,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는 압류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있던 원고 부모님의 묘지를 개장하여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개장신고를 하였던 점(을 제4호증), ②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증조부님의 묘지와 비석 등은 이 사건 각 임야가 아닌 ○○시 D 임야 96㎡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내지 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원고의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묘지 및 비석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척기간의 도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가) 먼저 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정명령에 적용되는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참조),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참조).

③ 위반 건축물이 생긴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위반건축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장기간 불법 상태가 유지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근거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의 법리 등을 임의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2017. 4. 13.을 납부 기한으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납부 독촉을 거쳐 2017. 6. 30. 이 사건 종전 압류처분을 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종전 압류처분의 목적물인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2019. 5. 7. 폐차된 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이에 피고는 2020. 7. 20.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17. 3. 13.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30.의 이 사건 종전 압류처분으로 중단되었다가 위 화물차가 폐차된 2019. 5. 7.부터 다시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0. 7. 20.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

판사 김○○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관계 법령

■ 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 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 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 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 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